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 - - -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4. 23
 다. 상 정 일 자 :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07.5.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임석진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되면서 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징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관련 수수료 신설 2건 및 명칭변경 2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 등 관련 수수료 신설 6건 및 명칭변경 4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관련 수수료 신설 2건 및 명칭변경 2건
- 「공연법」 및 「출판 및 인쇄 진흥법」규정에 의한 수수료 명칭변경 2건 및 삭제 3건

3.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연법 제39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6.4.2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분법·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증명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적법성 부문에서는

이번에 조정하려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에서 징수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음.

다.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수료가 삭제되는 제증명이 3건인 반면, 새롭게 신설되는 제증명이
10건으로 우리구 세입에는 다소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라. 타당성 부문에서는

- 이번 개정내용중 명칭변경 11건중 제증명 구분란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은 표기상의 오류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그외 것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제증명 민원명칭을 「○○○등록신청」에서
「○○○등록」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사유도 불분명 할뿐아니라 조례 「별표1」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맞지
않아 따로 붙임 주서정정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자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자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자정 확인 등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문화공보관계			6. -----			6.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1) 영화상영권 등록	1건	20,000원	(1)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	---
<u><신설></u>			(2)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1건	10,000원	(2) 영화상영권 변경등록신청	---	---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	---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	---
<u><신설></u>			(5) 게임제작업 등록	1건	30,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	---
<u><신설></u>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신청	---	---
<u><신설></u>			(7) 게임배급업 등록	1건	30,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
<u><신설></u>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신청	---	---
(3)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45,000원	(9)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	---	(9) 게임제공업 허가신청·등록신청	---	---
(4)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22,500원	(10)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변경등록	---	---	(10) 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	---	---
<u><신설></u>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30,000원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
<u><신설></u>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	---
(7)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개별업종 기준 적용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	---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신고	---	---
(8)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건	개별업종 기준 적용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변경신고	---	---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	---
<u><신설></u>			(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5) <개정안과 같음>	---	---
<u><신설></u>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6) <개정안과 같음>	---	---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17) 노래연습장업 등록	---	---	(1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1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	(1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
(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90,000원	(19) -----	---	---	(19) <개정안과 같음>	---	---
(10)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원	(20) 공연장 등록	---	---	(20) 공연장 등록신청	---	---
(11) 공연장업등록 변경신청	1건	10,000원	(21) 공연장 변경등록	---	---	(21)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	---
(12) 공연장업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삭제>			<개정안과 같음>		
(13)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삭제>			<개정안과 같음>		
(14)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삭제>			<개정안과 같음>		

※ 수정안의 기준 및 요액은 개정안과 같음